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7년 4월 23일
개정 2000년 9월 5일
개정 2003년 9월 10일
개정 2011년 7월 1일
개정 2012년 8월 17일
개정 2015년 3월 31일
개정 2016년 9월 30일
개정 2017년 6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회칙 제13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1조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별로 안배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이사, 위원 및 간사를 둔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수석 부회장이 겸임하고,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하며,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장 기 능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3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학술지 발간 기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논문 심사 기준

제1조 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인접 학문에 관한 논문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어 교육

적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 제2조 내용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표절, 연구부정행위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제3조 전개의 논리성: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멀티미디어 언어 교육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제4조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논문은 연구 문제 제기, 연구의 활용성 및 효과의 기대성 등에 대한 분석과 과정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 제5조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멀티미디어 언어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창출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조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5장 심사 절차

- 제1조 접수: 논문 투고 규정에서 명시한 마감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논문을 접수한다. 온라인 논문 투고시 논문유사도결과, 저작권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규정 정독 및 준수 서약서 파일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이 접수된 네 개의 파일을 확인하면 접수완료메일이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다만, 논문투고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 발행 예정일: (1) 봄호-3월 31일 (2) 여름호-6월 30일
(3) 가을호-9월 30일 (4) 겨울호-12월 31일
-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언어별, 전공별로 분류하고 회장단 및 편집이사 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언어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3인 이상(3~5인)을 선정한다. 이때 당해호의 투고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메일과 함께 심사 대상 논문 그리고 논문 심사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해서 보낸다. 세부 분야가 동일한 논문이 2편 이상 투고 된 경우에는 한 심사위원이 2편 이상을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반송’의 4 등급으로 판정하고, 심사평 난에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제5조 심사 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KAMALL 심사보고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정이 표기된 심사결과파일을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수정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제6조 편집위원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하여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중에서 과반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를 부여하면 ‘게재’ 가로, ‘반송’으로 부여하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과반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후에 다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 요구사항이 제시된 파일을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서 투고자에게 전송한다.
- 제8조 기타: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표절,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논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동안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